

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이유

- 급속한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하여 소외받는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질환으로 고정적인 의료기관 진료를 받으면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
- 따라서 병원, 약국 이용 시 어려움이 있어 건강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

2. 관계법령

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3. 주요골자

- 가. “저소득 노인계층” 이라 함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아니하는 자 중 사하구 거주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말한다. (안 제2조)
- 나.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하지역 가입자이며,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미만인 노인세대로 한다. (안 제3조)
- 다. 지원예산은 매년 구청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. (안 제7조)

4. 검토의견

본 조례 제정 건은

- 급속한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하여 소외받는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질환으로 고정적인 의료기관 진료를 받으면서도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
- 저소득 노인계층에 대하여 제도적 보호장치를 법정화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행정의 실효성 확보와 복지서비스 확충에 크게 기여 한다고 생각되며
- 서울, 대구, 광주 등 대도시 자치구와 경기 파주시, 강원 정선군, 전남 광양시, 경북 안동시 등 시·군을 비롯하여 부산진구, 서구, 남구 등 전국적으로 40여개에 이르는 자치단체에서 기히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고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공적부조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 한다면

위 조례 제정 건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나

작금의 어려운 구의 재정상태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지원규모나 지원대상자를 적의 조정하여 추진함이 재정운영상 합리적이라고 생각 됩니다